

<별첨 2. 전문상담기관 상담사 자격 기준>

항목		세부 자격 기준	비고
학위/교육		○ 전공 - 간호학, 보건학, 사회복지학, 상담학, 심리학, 정신의학, 중독 재활학 석사학위 이상 - 도박중독 회복자의 경우, 학사 학위 인정 ※ 회복자 인정 기준 · 단도박 2년 이상으로,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· 담당 상담사 및 주치의의 추천서를 통해 확인(예방강사, 회복자 모임 운영 등 회복관련 활동내역 기재)	필수 사항
자격	국가 자격	○ 사회복지사 1급, 2급 ○ 임상심리사 1급, 2급 ○ 정신건강전문요원(간호, 사회복지, 임상심리) 1급, 2급 ○ 청소년상담사 1급, 2급	필수 사항 (1개 이상)
	학회 (협회) 자격	○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(중독정신간호사) ○ 한국상담학회(전문상담사) ○ 한국심리학회(상담심리사, 상담심리전문가, 임상심리전문가, 중독심리사, 중독심리전문가) ○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(중독전문사회복지사) ○ 한국중독전문가협회(중독전문가) ○ 한국중독정신의학회(학회 등록 전문의)	
경력		○ 국가 자격 및 학회(협회) 자격 1급 소지자 ○ 국가 자격 및 학회(협회) 자격 2급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자	필수 사항
교육		○ 등록상담사 도박중독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 - 등록 상담사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중독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(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, 조건부 승인)	필수 사항
비고		○ 상근 근무 경력만 인정(단회성 프로그램 진행, 프로젝트 참여, 워크숍 참여 경력 등 제외) ○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필수 - 인증기관 내 모든 상담사는 치유상담사 양성과정(구.전문인력양성과정)을 수료하여야 함 ○ 상담사 자격기준 검토 후 최종 통보	